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99 |
|----------|----|

2014. 12. 19.(금)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4년 12월 1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12월 2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12월 9일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며,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규정 마련
(안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4조)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위원회 설치(안 제6조,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문홍열)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현행 조례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입주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의 여건에 맞도록 조문을 현실화함.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은(제17조부터 제32조까지) 개정조례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재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제13조(연구개발사업 지원), 제14조(재단에 대한 지원) 등 재단 지원에 대한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 지원 근거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등의 설립 및 지원),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에 따라 지원이 가능함.
- 입법예고('14.10.20.~11.9.)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행 조례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현실에 맞추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관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충북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라 한다)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단지를 말한다.
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첨복단지 지원기관을 말한다.(이하 “재단”이라 한다)
3.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침복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바이오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침복단지 육성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침복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매 3년 마다 침복단지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침복단지 비전 제시
2. 국·내외 침단의료산업의 현황 및 발전 전망
3. 국·내외 침단의료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4. 침복단지 입주기관 육성시책
5. 침복단지 입주기관 자금·기술·인력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복단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육성사업) ① 도지사가 침복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약개발 또는 의료기기 개발을 행하는 입주기관의 육성
2. 침단의료기기 및 의약품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한 전문 임상센터 (동물실험센터를 포함한다)의 육성
3. 신물질, 신의약품과 의료기기 융합제품의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침복단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우수인력·기관 등의 유치와 이와 관련된 의료기관 및 연구소

의 설립·관련 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침복단지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침복단지 육성 및 지원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침복단지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침복단지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충청북도 관련 실·국장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원
3. 입주기관·단체의 임원
4. 기타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침복단지 지원 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과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침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주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신약 후보물질 및 기반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2. 의료기기 제품화 및 기반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3. 신약 후보물질의 약물특성 및 의료기기의 생체성능·안전성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연구개발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재단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재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입주기관 지원) ① 도지사는 첩복단지 내에 우수기업 유치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세 감면 조례에 따른 감면
2. 토지나 건물의 임대료 등 감면
3.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4.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5. 우수 인력유치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3. 재정지원금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거나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등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입주기관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입주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관리·정산·지도·감독 등을 해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재정지원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조례를 폐지한다.

관계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과 국내외 의료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7.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성과의 활용 및 전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등의 설립 및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연구서비스의 제공 수준, 연구성과의 향상 정도,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은 공동으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시설·인력 등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의료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공동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설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둔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동연구사업 실적 평가 및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

7.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자금 지원 및 규제 특례 적용 등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28조(구성 및 운영)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
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그 밖의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
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국내외 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라 한다)의 원활한 발전과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송첨복단지"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술"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을 말한다.
5.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의료연구개발의 연구인력과 시설 등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맞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나.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의료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3) 연구기관

4) 정부출연기관 등

7.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8.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 오송첨복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제2장 오송첨복단지 입주기관 지원위원회 설치

제3조(지원위원회 설치) 오송첨복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송첨복단지 입주기관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오송첨복단지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입주기관지원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가 부의 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오송첨복단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 관련 실·국장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원
3. 입주기관·단체의 임원
4. 바이오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기타 첨단의료복합단지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주기관지원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과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등) ① 도지사는 입주기관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협회, 컨설팅사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회사·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와 입주기관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주기관지원정책의 수립 및 기관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기관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입주기관 지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자문관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지원)자문단 소속의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기금 운용 (삭제 2010. 1. 1)

제12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지원 기금) (삭제 2010. 1. 1)

제13조(기금의 용도) (삭제 2010. 1. 1)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삭제 2010. 1. 1)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삭제 2010. 1. 1)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삭제 2010. 1. 1)

제4장 오송첨복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7조(오송첨복단지 지원과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오송첨복단지 지원과 관련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세 감면) 도지사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 기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입주지원) ① 도지사는 오송첨복단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오송첨복단지에 입주하려는 기관 등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도지사는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과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충청북도민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충청북도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오송첨복단지에 입주하는 기관이 충청북도민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충청북도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① 도지사는 오송첨복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오송첨복단지 조성개발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인프라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오송첨복단지 인근에 입주할 경우 기본적인 인프라인 진입도로와 용수시설, 폐수종말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등의 설립·지원) ① 충청북도와 의료연구개발기관,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2. 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기를 연구개발 하는 기관

3. 그 밖의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연구용 세포 등을 보관·관리하는 기관

나. 실험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기관

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기관

라. 그 밖의 의료연구개발관련 지원 관리기관 등 시행령 제9조에 정하는 기관

4. 복합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의 성격을 가지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 도지사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료연구서비스의 제공수준, 연구성과의 향상 정도,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조합 결성이나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제26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도지사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입주기관 환경개선 지원) 도지사는 입주기관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8조(수도권 기관 이전비 지원)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수도권안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 이라 한다.)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등(이하 "투자" 라 한다)을 포함한 투자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타 시·도 기관 이전비 지원) ① 도지사는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관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오송첨복단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관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과 주사무소용 건물이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될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제3호에 해당 될 경우 3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 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 건축시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2. 기존건물 취득시 : 건물취득비
3. 건물임대시 : 임대료

③ 기관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기관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소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시설장비 구입과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 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오송첨복단지내 증설시 시설투자비지원) 도지사는 오송첨복단지내 입주한 기관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기관을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각 각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기관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기관 신규증설의 경우 : 토지매입(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2. 기존기관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제31조(투자기관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1일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투자 기관

2. 그 밖에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특별 지원이 필요 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가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지원한도)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기관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3조(이전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등) ① 도지사는 이전기관 및 도내 증설 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원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청원군의 지원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군이 분담하는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청원군수와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청원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4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도지사는 기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과 기관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지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입주기관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입주기관으로 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입주기관이 입주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2. 기관을 가동하거나 사업 개시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기관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관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기관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8.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 못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거나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과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